# 호반써밋 DMC 힐즈(덕은도시공원 A3BL) 아파트 입주자모집공고

HOBAN SUMMIT
DMC HILLS

■ 접수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방지를 위한 홍보관 운영 안내
- 본 아파트는 신규 주택공급 과정에서 청약자 보호 및 원활한 청약 진행과 홍보관 방문객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방역 조치 사이에 홍보관을 개장하고 있으며 대표 홍보관 : 호반써밋 DMC 홍보관 운영합니다.
- 단정한 차림 이용하기 등 방역지침에 따라 홍보관 자율적인 방역 및 안전 관리를 하고 있으니 홍보관 방문 시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1. 홍보관 운영관련 안내
- 홍보관은 단정한 차림 하고 회사에서 DMC 힐즈 홈페이지(www.hobansummit-dmc.co.kr)에 등록하여 사전예약 후 운영합니다.
- 특별공급 신청자 분양 안내서 전달시 홍보관 방문시 원활한 이용 및 방문자 관리를 위하여 홍보관 예약 시 방문 일자 및 방문 시간을 홍보관에서 정수기 가능합니다.
(10:00~14:00, 운영정규수는 불가, 특별공급 신청자는 홍보관에서 하시고자 하는 경우 대표번호(☎ 1566-3684)로 방문 예약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단정하지 않은 차림 및 홍보관 내에서 다른 사람과 대화하는 경우 방문이 제한되오니 방문 전 양해 바랍니다.
- 해당 홍보관은 84세대 이상 주택공급 과정에 있어 홍보관 운영 및 방문자 관리 등 모든 업무를 위탁하고 있으며 홍보관 운영 및 관리 등 모든 사항에 대한 문의 사항은 해당 홍보관에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2. 홍보관 방문 시 마스크착용 준수하기 등을 권장 및 당첨자 방문 제한
- 홍보관 입장 시 열화상카메라 및 비접촉체온계를 통한 체온측정 및 마스크 착용 여부 확인 후 입장하시기 바랍니다.
- 홍보관 입장 시 마스크 미착용 시 및 체온 37.5도 이상 경우 , 손소독제, 비접촉체온계 등 예방절차에 불응하는 경우 홍보관 입장 제한하오니 양해 바랍니다.
3. 신청 코로나바이러스 확산 및 방역조치 등에 따른 입장자 자격변경사항 홍보관 방문 및 입장 시 자격 변경 사항 발생 시 홍보관 방문 전 공지 및 안내하오니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4. 입주자모집공고 과정에서 청약자 보호 차원의 청약 이외의 입주 시 입주 일정 변경 및 입주 지연 사항 발생 시 홍보관 방문 없이 공지 및 안내하오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 청정교소 | 총세대 | 배정기준 | | |
|---|---|---|---|---|
| | | 기준 | 청수 | 비고 |
| 해당 사도 거주자 기준이 | 15 | 10년 이상 | 15 | 공급신청자가 선택하였는지에 따라, 아파트가 분양한 경우 상단으로 분양서 해당 지역에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부터 계속하여 거주한 기간을 산정 |
| | | 5년 이상~ 10년 미만 | 10 | ※ 1순 경쟁자 복합지역 거주자 : 1개월 이상 거주한 경우 인정, 이주비 지급 등의 조건 충족하지 않는 경우 해당 지역에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부터 계속하여 거주한 기간을 산정 |
| | | 1년 미만 ~ 3개월 이상 | 5 | |
| 입주자자격 기입기간에 | 5 | 10년 이상 | 5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공급신청자의 기입기간을 기준으로 해야 입주자자격의 종류, 금액, 기입자명 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기입일 기준으로 산정 |

(1), (2) 주민등록표 등본 등 공공기관 발급 서류 : 접수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된 것만 인정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주민등록표등본 등 공공기관 발급 서류 : 기준일 기준 , 기준일자 이전 발급된 것만 인정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5) 주민등록표등본에 주민등록표초본 등 공공기관 발급 서류 : 기준일 기준 , 기준일자 이전 발급된 것만 인정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6) 주민등록표등본에 주민등록표초본 등 공공기관 발급 서류 : 기준일 기준 , 기준일자 이전 발급된 것만 인정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7) 주민등록표등본에 주민등록표초본 등 공공기관 발급 서류 : 기준일 기준 , 기준일자 이전 발급된 것만 인정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8) : 입주자자격 기입일자보다 빠른 일자로 발급된 것만 인정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신혼부부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 : 전용면적 85㎡ 이하 공급세대수의 20% 범위) : 112세대
• 대상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수도권(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지역에 거주하거나 이전하여 이전하여 이주하는 경우 (본인신고일 기준, 전입일 무주택세대구성원 (이혼해보는 준비다고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세대구성원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기준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기준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기준일 현재